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호

발행인 : 박종우

발행일 : 2022년 11월 2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손배 폭탄 금지! 진짜 사장 교섭!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3,160억!

대한민국에서 노조하려면 목숨걸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무려 3,160억원이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도 많았다.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노동조합 파괴!

진짜 사장은 책임 회피!

사내하청 노동자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도 제대로 교섭하기 어렵다. 진짜 사장인 원청 회사가 법적 책임이 없다며 교섭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진짜 사장은 책임 없다며 도망가고, 무늬만 사장인 하청 사장은 교섭에 나와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다.

노조법 2·3조 개정하자!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고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11/12 전국 노동자대회 총궐기를 성사시켰고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최대한 압박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14시

△ 장소 : 서울 국회 앞 (국민은행 건너편)

※ '외투법 개정, 구조조정 중단,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

: 같은날 13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